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소비자안전기본법안

검 토 보 고

■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23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체계 및 특징	6
2. 법제정 필요성	11
3. 주요 조문별 검토사항	18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18
(2) 권리 및 책무(안 제3조부터 제5조)	21
(3) 소비자안전계획 수립 등(안 제10조)	23
(4) 해외위해재화 안전관리(안 제11조)	26
(5) 소비자안전 조사 등(안 제12조)	30
(6) 위해재화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안 제13조 ~ 제17조)	33
(7)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안 제19조)	39

(8) 국내대리인의 지정 의무(안 제20조)	43
(9)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및 업무 관련 규정(안 제21조 ~ 제24조) ...	48
(10) 소비자단체소송(안 제25조 ~ 제28조)	55
(11) 통신판매중개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제재(안 제30조 ~ 제32조)	64
 【참고자료 1】 위해재화 안전기준 마련이 지연되는 주요 사례	69
【참고자료 2】 소비자 단체소송 현황	7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영의원 등 20인
2. 제 안 일 : 2025. 11. 13.
3. 회 부 일 : 2025. 11. 14.

II.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등장, 온라인 거래의 급속한 확대, 해외직구 등 소비환경의 변화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하는 위해 요인이 다변화되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식품·제품·화학물질 등 품목별로 분리 운영됨에 따라 소관 부처가 흩어져 있어 소비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새로운 위해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위해정보가 여러 기관에 산발적으로 축적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해재화에 대한 차단과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처별·품목별로 분산된 소비자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운영하고,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1. 위해정보의 통합 제공(안 제7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위해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2. 소비자안전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등(안 제10조)

국가는 소비자안전을 보호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소비자안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3. 해외위해재화 안전관리(안 제11조)

해외위해재화의 국내 수입·판매·제공 등을 제한 및 차단하기 위한 협력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및 관련기관·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소비자안전 조사(안 제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거나 발생한 위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5.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안 제14조)

1) 사업자는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재화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나 위해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6. 위해재화의 수거·파기 등(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1)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나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거·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화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거·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함 있는 재화 등에 대한 수거·파기 등 조치에 관한 실적과 분석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7.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등(안 제19조 및 제20조)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

신판매중개자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이버몰을 통해 유통·판매되는 재화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제공하여 위해재화 등의 유통·판매 차단조치를 요청하고, 소비자안전 관련 분쟁·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 기준 및 인력·설비를 갖추도록 함.

2)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소비자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나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 지정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8.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및 활동(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소비자안전정책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두며, 소비자안전경보 등의 발령 및 위해정보의 수집·처리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9. 소비자단체소송(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1)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현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위해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소비자단체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위해 및 그 발생 가능성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함.

10.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조사 등(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과되는 안전관리의무 또는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고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체계 및 특징

□ 제정안은 부처별·품목별로 분산된 소비자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운영하고,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9개 장, 4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조번호	조 제목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소비자 안전 확보 및 강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및 사업자의 책무 규정과 소비자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정의	-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안전, 위해정보, 안전취약계층, 해외위해재화 등 용어 정의
제3조	소비자의 권리	- 국가등의 소비자안전정책의수립·시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소비자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권리 등 재화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규정
제4조	국가등의 책무	- 소비자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 등
제5조	사업자의 책무	-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할 책무 등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2장 소비자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		
제7조	위해정보의 통합 제공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소비자안전 정보 통합 제공 및 관계기관 등의 위해정보 연계·통합 의무화
제8조	교육 및 홍보	- 위해예방 및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제9조	국제협력	-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제3장 소비자안전정책의 수립		
제10조	소비자안전계획 수립 등	- 분야별 안전계획을 포괄하는 범부처 종합계획 수립
제11조	해외위해재화 안전관리	- 해외위해물품관리를 위한 민관합동협의체 운영
제4장 소비자안전의 확보		
제12조	소비자안전 조사 등	- 법령주수, 피해차단 및 위해원인 규명 필요시 소비자안전 조사 실시 근거
제13조	시정요청 등	-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 위해발생 우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 요청 등
제14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 사업자가 결함정보를 중앙행정기관에게 보고할 의무 규정
제15조	재화등의 자진수거 등	- 사업자의 재화등의 자진수거 등 필요한 조치 의무
제16조	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업자에 대한 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제17조	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업자에 대한 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제18조	수거·파기 등 조치 실적 및 정보 공개	- 공정위가 수거·파기 등 조치실적 및 분석결과 등 공개
제19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업체에 위해정보 제공·조치 요청, 위해정보 조치현황 제출, 분쟁 담당 인력 설비 등 구비, 분쟁처리결과의 소비자 고지 등
제20조	국내대리인 지정	-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제5장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및 활동		
제21조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 설치 근거
제22조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	- 위해정보 수집 및 처리 등 소비자안전센터 업무 규정
제23조	소비자안전경보등의 발령	- 위해 발생 및 확대 방지 위한 소비자안전경보등 발령

제24조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 위해정보 수집 및 처리,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
제6장 소비자 단체소송		
제25조	소비자단체소송	- 위해발생 또는 위해 예상 시 위해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규정
제26조	자료제출명령	-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위해 및 그 발생 가능성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근거
제27조	비밀유지명령	-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 명령을 결정할 근거
제28조	비밀유지명령 취소	- 비밀유지명령 신청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자의 비밀유지명령 취소 신청
제2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등의 청구 사실을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지 등
제7장 조사 및 시정조치		
제30조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조사 등	-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또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시 공정위의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한 조사 근거
제31조	시정조치 등	-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 안전기준 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 등
제32조	과징금	-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정률 또는 정액 과징금 부과
제33조	조사의 의뢰	- 국가등은 사업자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록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사 의뢰
제34조	청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령 등의 조치 시 청문 실시
제8장 보칙		
제3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임·위탁 근거
제36조	비밀유지 의무 등	- 관련 공무원,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의무 등
제3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공정위의 심의·의결, 제19조 및 제20조 위반행위 공정위 조사,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과징금 부과·징수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장 벌칙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위해정보 수집 및 처리 업무 종사자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9조	벌칙	- 제17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명령 위반, 비밀유지명령 시 처벌 등
제40조	양벌규정	- 위반 행위자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 부과 근거 및 면책사유
제41조	과태료	- 공정위의 출석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위반행위 조사 시 자료 등의 미제출 등에 과태료 부과
부 칙		
제1조	시행일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
제2조	적용례	- 제4조제5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적용례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 「소비자기본법」 관련 규정 개정

□ 제정안은 「소비자기본법」 상 위해의 방지,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 준수, 검사·시료수거와 자료제출, 시정요청 등 안전 규정을 이관 또는 강화하고 있음.

<소비자기본법 및 제정안 비교>

소비자기본법	제정안	비고
위해의 방지(제8조)	국가등의 책무(제4조)	이관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의 준수(제20조제1항)	사업자의 책무(제5조)	이관
검사·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제77제1항)	소비자안전 조사 등(제12조)	이관, 강화
시정요청 등(제46조)	시정요청 등(제13조)	이관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제14조)	이관

소비자기본법	제정안	비고
물품등의 자진수거 등(제48조)	재화등의 자진수거 등(제48조)	이관
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제49조)	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제16조)	이관
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제50조)	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제17조)	이관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제51조)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제21조)	이관, 강화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제22조)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제52조)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제24조)	이관, 강화
소비자단체소송(제70조~제76조)	소비자단체소송(제25조~제29조)	준용, 확대

□ 한편, 제정안은 소비자안전종합계획(안 제10조), 통신판매중개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자 안전관리 조치의무 부과(안 제19조),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안 제30조), 해외위해재화 차단 등 대응 강화를 위한 해외물품관리 민관합동협의체 운영(안 제11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안 제20조) 등을 신설하고 있음.

2. 법제정의 필요성

- 현행 법령체계상 소비자안전 분야는 산업별 내지 영역별로 각각의 정부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해 다루어져 왔고, 해당 분야에서 개별법이 미비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각 분야별로 마련되어 있는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등 일반법의 안전관련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음.

<현행 소비자안전법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산업표준화법, 표시광고법,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공산품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승강기제조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해상교통안전법, 철도안전법, 시설물안전관리법, 공연법 등

- 현행 소비자안전 관련 대표적인 일반법을 살펴보면,
- 「소비자기본법」은 전반적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일반법으로, 소비자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기본권 중 하나로 소비자안전권을 인정하고, 소비자정책의 일환으로 물품 및 용역으로부터의 소비자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품안전기본법」은 소비제품 분야에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처·법령별 산재된 개별 제품에 관련된 안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분야에서 식품안전성 확보와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정책을 체계화하고 종합적으로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소비자기본법 상 안전 관련 규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개요 비교>

구분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소비자권익증진 (제1조)	국민생명 보호, 건강 및 재산피해 예방(제1조)	국민의 건강·안전한 식생활 영위(제1조)
대상	물품 및 용역의 안전(제4조 및 제8조)	소비자가 최종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 내지 부속품,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제3조)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 제외)의 안전(제2조)
주요 내용	타 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규율 - 위해방지 기준설정 및 표시·광고기준 설정 등(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 소비자안전센터, 위	타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제품안전 규율 - 제품안전관리 종합 계획 수립(제7조) - 제품안전정책협의 회 운영(제7조의2) - 안전성 조사(제9조)	타 법령에서 규율하지 않은 식품안전 규율 - 국가·지자체의 식품안전정책 수립 책무(제4조)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제7조~제

구분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해정보 수집·처리(제51조, 제52조) - 물품 및 용역의 리콜(제49조, 제50조)	- 제품 리콜권고·명령(제10조~제13조)	14조) - 긴급대응, 추적 조사 및 리콜(제15조~제19조)

□ 그러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현재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등장, 온라인 거래의 급속한 확대, 해외직구¹⁾ 등 소비환경의 변화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하는 위해 요인이 다변화되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제품·의약품·화학물질 등 품목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소비자안전 정책은 소관 부처가 흩어져 있어 소비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새로운 위해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²⁾,

위해정보가 여러 기관에 산발적으로 축적³⁾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해재화에 대한 차단과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1) 온라인 해외직구 거래액 : ('21년) 5조 2,574억원 → ('22년) 5조 9,454억원 → ('23년) 6조 6,819억원 → ('24년) 7조 9,583억원(잠정치) (출처: 통계청 온라인 쇼핑동향)

2) 【참고】 위해재화 안전기준 마련이 지연되는 주요 사례(자료: 공정위)

3) 공정위 한국소비자원(소비자안전센터),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나라), 환경부(초록누리) 등 소관 부처별로 제공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관계기관의 안전성조사 현황>

조사기관	조사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 448개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조사(2회) - 85개 위해제품 발견
관세청	▶ 310개 어린이제품 조사(2회) - 55개 위해제품 발견 ▶ 454개 접촉성 금속 장신구 조사(2회) - 139개 위해제품 발견
환경부	▶ 415개 접촉성 금속 장신구 조사(1회) - 49개 위해제품 발견
소비자원	▶ 137개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조사(5회) - 64개 위해제품 발견 ▶ 구매대행 27개 어린이제품(완구) 조사(1회) - 10개 위해제품 발견
서울시	▶ 324개 어린이 제품 등 조사(18회) - 98개 위해제품 발견
경기도	▶ 70개 어린이제품 등 조사(1회) - 37개 위해제품 발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이에 제정안은 소비자안전에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부
 차별·품목별로 분산된 소비자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운
 영하고,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

□ 이러한 제정안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찬성하는 입장⁴⁾은, 부처별·품목별로 분리 운영되는 현행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소비자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안전분야의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고, 기존의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선언적·포괄적 규정(권리·책무 등)을 주로 담고 있어, 다양한 안전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상세히 규정하기는 곤란하므로, 급증하는 해외위해재화 등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⁵⁾은, 제정안의 내용은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법제도의 실효성은 집행의 문제이지 입법 공백의 문제가 아님에도, 동일한 기능을 다시 별도의 기본법으로 입법하는 것은 규제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 입법 실익이 낮고,

소비자안전은 분야별 전문화된 개별법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 조사 및 이중 제재가 발생할 문제가 있으며, 사업자가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법적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의견임.

4) 공정거래위원회

5)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 이를 종합하여 보면,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전반적인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일반법으로, 소비자안전 정책의 체계화 및 총괄 조정 기능의 부재 등 소비자안전에 특화된 일반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현행의 소비자안전 정책 및 정보는 부처 및 품목별로 분산되어 칸막이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현행의 제조사 중심의 소비자 안전관리 책임은 한계가 있으므로 통신판매중개자 등에 대한 소비자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소비자안전은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안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종합적·선제적 대응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일본 역시 소비자안전에 관하여 전기용품안전법,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액화석유가스안전법 등 개별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해당 법률은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그 외의 분야에서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2009년 5월 「소비자안전법」을 제정한 바 있음⁶⁾.

6) 소비자안전법은 소비생활 전반에 있어서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의 설치를 통한 소비생활상담의 실시, 소비자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결과공표, 소비자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일본 소비자안전법」, 고형석, 2009).

□ 다만, 제정안은 현행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이관·강화하고 있으나, 소비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만 있을 뿐 평가 등의 사후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동일한 재화 등에 대한 부처의 소관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 발생 시 이를 조정·중재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는 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주요 조문별 검토사항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소비자의 안전확보 및 강화” 등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소비자기본법」⁷⁾이 포괄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과 차별화하여 ‘안전’분야에 특화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등 분산된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하려는 법안의 핵심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강화</u> 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u>소비자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u> 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안 제2조에서는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기본적 용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면서 “재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물품”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⁸⁾보다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

7) 「소비자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소비자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

는 것으로 보임9).

- 또한, 「소비자기본법」은 단순히 물품등을 제조·판매하는 자를 사업자로 보지만, 제정안은 재화등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명시하여 일회성 거래가 아닌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에게 안전관리의 책무¹⁰⁾를 명확히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 제정안은 「소비자기본법」보다 ‘위해 방지’와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소비자안전, 위해정보, 안전취약계층, 해외위해재화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음.

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9)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10) 제정안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재화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재화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를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등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및 소비자단체의 조사 및 위해방지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4조제5항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재화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소비자기본법」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안전”이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특성, 통상적인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사용할 때 통상 갖추어야 하는 안전을 말한다.
4. “위해정보”란 재화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5.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같이 위해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계층을 말한다¹¹⁾).
6. “해외위해재화”란 해외에서 안전과 관련한 결함으로 인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았거나, 제4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국내 수입·유통·판매가 불가한 재화등을 말한다.

(2) 권리 및 책무(안 제3조부터 제5조)

- 제정안은 위해재화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안 제3조), 소비자 안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안 제4조), 위해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안 제5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3조(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재화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의 소비자안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2. 소비자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 3. 재화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 4.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소비자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등은 위해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소비자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할 책무를 지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해외위해재화의 국내 유입·판매등에 따른 소비자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

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재화등의 성분·함량·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재화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재화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재화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를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등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및 소비자단체의 조사 및 위해방지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4조제5항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재화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정안은 제5조 사업자의 책무와 관련하여 위해가 발생한 경우 “위해 확산 방지” 의무(안 제5조제2항)를 추가하여, 사업자 책무를 「소비자기본법」 12)보다 더 강화하고 있음.

12) 「소비자기본법」 제18조(소비자권의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및 위해방지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 다만, 제정안 제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해발생 방지에 필요한 조치 강구 의무와 같은 조 제3항의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취한 국가·지자체 및 소비자원의 조사 및 위해방지 조치 적극 협력의무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과 중복되므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사업자의 책무 중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재화등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 금지 의무(안 제5조제4항)”의 경우, 위반 시, 중앙행정기관은 시정명령(안 제31조제2항)을 내릴 수 있고, 별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안 제41조제2항제1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으로써 사업자 책무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3) 소비자안전계획 수립 등(안 제10조)

□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비자안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소비자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 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략)

- 소비자안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①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하고, ②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시행계획 중 소비자안전 분야가 수립된 것으로 봄.

제정안
제10조(소비자안전계획 수립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소비자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비자안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소비자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한다. 1.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소비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4. 재화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소비자안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소비자기본법」 제22조¹³⁾에 따른 시행계획 중 소비자안전 분야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⑤ 소비자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품목별 안전 대응 체계는 안전 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우므로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소비자 정책 체계와 연계되고, 절차적 중복을 피하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제10조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소비자안전계획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별도의 수단이 부재하여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소비자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시행령14)에 따르면 소

13) 「소비자기본법」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도별시행계획(이하 “시·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 및 시·도별시행계획을 취합·조정하여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도별시행계획(이하 “시·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난해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나 시·도별시행계획의

비자정책 시행계획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추진실적결과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4) 해외위해재화 안전관리(안 제11조)

□ 급증하는 해외위해재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민간 간 적극적 협력이 중요한 시점임.

□ 현재, 해외위해재화 관리를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근거로 공정위 주관 하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부,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간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서울시 등 9개기관에서 참여 중인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를 운영¹⁵⁾하고 있음.

- 해외위해물품 감시에 중복 또는 공백이 없도록 관련 부처 간 조사 계획·차단 실적 등 공유하고, 집중 모니터링 기간 운영, 국내 안전기준 개선방안 협의 등을 통해 해외위해물품 유통을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결과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2020년 2월 구성, 연 2회 대면 회의(구성 이후 총 14회 회의 개최)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해외위해물품 감시 강화 및 부처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함.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 참여기관별 역할>

부처·기관	역할	비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전 정책 총괄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 제품 전자파 적합성 조사 등	
관세청	통관 물품 안전성 조사 등	
국가기술표준원	소관품목(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등) 안전성 조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품목(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 안전성 조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품목(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 안전성 조사 등	
서울특별시	생활밀접 품목(어린이용품 등) 안전성 조사 등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안전 정책 총괄 지원	간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국표원 소관품목 안전성 조사 지원 등	

(자료: 한국소비자원)

□ 이에 제정안은 해외위해재화 대응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및 관련기관·단체 간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제정안
제11조(해외위해재화 안전관리) ① 해외위해재화의 수입·판매·제공 등을 제한·차단하기 위한 협력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및 관련기관·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계속성·안정성을 증진시키고, 민간단체의 참여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다만, 해외위해재화 차단 논의 과정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미공개 위해정보가 다뤄질 수 있는데 민간단체가 참여할 경우, 이들에게 어디까지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와 정보 유출 시 책임 소재(비밀유지의무 부과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¹⁶⁾.

□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 협의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에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¹⁷⁾되어 2026년 6월 시행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제품안전정책

16) 제정안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
3. 제33조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제39조(벌칙)③ 제36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① 제품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2.>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정책협의회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협의회와도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해외위해재화실무협의체’는 실무적·상시적으로 관계부처간 협력하에 해외 위해물품의 국내 유통을 감시 및 차단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비관리제품의 소관 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제품안전정책 실무협의회’는 제품안전 정책협의회 의결안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것이 주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협의체(협의회) 간 비교표>

구분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제품안전실무협의회
근거	소비자안전기본법안	제품안전기본법	
구성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소비자원 및 관련기관·단체	12개 중앙행정기관 ¹⁸⁾	
위원장	시행령 * 공정위 국장급	시행령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	국가기술표준원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6. 6. 3.] 제7조의2

구분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제품안전실무협의회
	공무원(현행)		
위원	시행령 * 과장급 공무원 또는 팀장급(현행)	시행령	
		국장급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역할	<u>해외위해재화의</u> <u>수입·판매·제공</u> <u>등을 제한·차단하기</u> <u>위한 협력사항 등을</u> <u>논의</u>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u>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u> -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 <u>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자료: 한국소비자원 제출 자료 재구성)

(5) 소비자안전 조사 등(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방지 및 위해 원인 파악을 위해 소비자안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사유를 위해정보가 다수 수집된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

18)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됨.

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기본법」의 조사보다 확대하고 있음.

- 사유는 ① 위해정보가 다수 수집된 경우, ②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또는 등록 소비자단체가 요청한 경우, ④ 그 밖에 이 법의 위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임.
- 절차는 「소비자기본법」 제77조(검사·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¹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12조(소비자안전 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등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

19) 「소비자기본법」

제77조(검사·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수거를 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료수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창고 등 저장소, 사무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소비자권의 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및 각종 실태조사 결과 등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해를 방지하거나 발생한 위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특정 재화등과 관련된 위해정보가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에 다수 수집된 경우

2. 제4조제5항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등록소비자단체”라 한다)가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안전 조사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77조를 준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소비자안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사를 실시한 후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요청한 소비자 또는 등록소비자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12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안전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험·분석·조사기관이 요청받은 수준의 시험·분석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2. 시험·분석 등의 요청 건수가 과도하여 해당 시험·분석·조사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동일한 소비자 또는 등록소비자단체가 동일한 목적으로 시험·분석 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4. 특정한 사업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시험·분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소비자안전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요청한 소비자 또는 등록소비자단체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위해재화등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위해 원인 파악이 중요하므로 「소비자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조사 중 안전분야를 이관하려는 것임.

□ 또한, 제정안은 소비자안전 분야에서 실시할 수 있는 조사 사유를 「소비자기본법」 보다 확대하고, 그 결과를 120일 내에 조사를 요청한 소비자 또는 등록소비자단체에 통보하도록 함.

□ 다만, 제3항은 ‘12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12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시간 내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위해의 심각성에 따라 120일 보다 단축된 기간 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긴급 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위해재화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안 제13조 ~ 제17조)

□ 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거·파기 등 권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시정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3조),

사업자는 위해 발생 또는 우려 제품의 결함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4조).

또한, 제정안은 사업자의 재화등 자진수거(안 제15조), 중앙행정기관의 수거·파기 등의 권고(안 제16조) 및 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안 제17조) 단계적인 리콜조치를 규정함.

제정안
제13조(시정요청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제16조에 따른 수거·파기 등의 권고 나. 제17조에 따른 수거·파기 등의 명령 다.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3. 그 밖에 재화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②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신속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재화등의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15조에 따라 해

당 재화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수거·파기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재화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재화등과 동일한 재화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파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수거·파기등

나. 자발적으로 한 수거·파기등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그 재화등이 제16조 또는 제17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화등을 제조·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2. 재화에 성명·상호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재화등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결함의 범위,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등의 결

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재화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재화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재화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재화등의 수거·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위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후 조치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상 위해재화에 대한 수거·과기 등을 위한 안전조치 규정 일체를 이관하는 것임.

<소비자기본법상 안전조치 규정 이관 사항>

소비자기본법	제정안	내용
시정요청 등 (제46조)	시정요청 등 (제13조)	- 공정위, 시·도시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거·과기 등 권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요청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제14조)	- 위해 발생 또는 우려 제품의 결함 보고의무(사업자)
물품등의 자진수거 등(제48조)	재화등의 자진수거 등(제15조)	- 위해재화 자진 수거·과기 등 의무(사업자)
수거·과기 등의 권고 등(제49조)	수거·과기 등의 권고 등(제16조)	- 위해재화에 대한 수거·과기 등 권고 및 공표 근거
수거·과기 등의 명령 등(제49조)	수거·과기 등의 명령 등(제17조)	- 위해재화에 대한 수거·과기 등 명령 및 공표 근거

□ 한편, 안 제14조 결함정보의 보고 의무는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47조를 그대로 이관한 것이나, 본 법안에서 신설된 소비자종합
지원시스템(제7조)²⁰⁾, 해외위해재화 협의체(제11조)²¹⁾, 통신판매
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제19조)²²⁾ 등과 연계됨으로써, 보고 의
무 이행의 실효성과 사후 관리 강도는 현행²³⁾보다 강화될 것으

- 20) 제7조(위해정보의 통합 제공)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위해정보를 연계·통합하고 이를 「소비자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해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위해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위해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1) 제11조(해외위해재화 안전관리) ① 해외위해재화의 수입·판매·제공 등을 제한·차단하기 위한 협력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및 관련기관·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 제19조(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이버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재화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직접 재화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받은 위해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에게 제공하고 위해 재화 등의 유통·판매 차단 등의 관련 조치를 요청할 것
 2. 중앙행정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이 위해 재화 등의 판매 차단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위해 재화 등의 판매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취한 관련 조치 현황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할 것
 3.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자안전 관련 분쟁이나 불만 등을 접수·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 것
 4. 사이버몰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소비자안전 관련 분쟁이나 불만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에 고지할 것
 5. 소비자로부터 소비자안전 관련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 그 원인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알릴 것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3)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사업자의 결함정보 보고 의무는 있으나, 각 부처(식약처, 산업부 등)의 개별 시스템에 흩어져 있어 공정위가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로 보임.

(7)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안 제19조)

- 제정안은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재화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위해정보 제공 및 차단 요청, 소비자안전 관련 분쟁 해결 인력·설비 구비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함.

제정안
제19조(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이버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재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직접 재화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해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에게 제공하고 위해 재화 등의 유통·판매 차단 등의 관련 조치를 요청할 것 2. 중앙행정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이 위해 재화 등의 판매 차단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위해 재화 등의 판매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의

퇴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취한 관련 조치 현황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할 것

3.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자안전 관련 분쟁이나 불만 등을 접수·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는 것

4. 사이버몰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소비자안전 관련 분쟁이나 불만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에 고지하는 것

5. 소비자로부터 소비자안전 관련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 그 원인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알릴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플랫폼을 통한 인터넷 소비가 보편화되면서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재화 등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므로 제정안과 같이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플랫폼의 특성상 국내 제품도 동일 상품이 다수 판매자를 통해 유통되는

측면이 있어 개별 조치보다 플랫폼 차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분쟁·불만 해결 등에 관한 의무규정²⁴⁾들이 소비자안전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비자안전 분야에서도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제3호 ~ 제5호)을 도입하려는 것임.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 내용>

구분	내용
1호	중앙행정기관·소비자원이 제공한 위해정보를 입점업체에 제공하고 관련 조치를 요청할 것
2호	중앙행정기관·소비자원이 요청한 판매 차단을 입점업체에 통보하고 관련 조치 현황을 제출할 것
3호	소비자안전 관련 분쟁·불만 등을 접수·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 줄 것
4호	소비자안전 관련 분쟁·불만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 고지할 것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 줄 것
2.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이버몰에 고지할 것
3.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

구분	내용
5호	소비자안전 관련 분쟁·불만 등을 접수시 원인을 조사하여 진행 경과 및 결과 등을 알릴 것

□ 다만, 제정안 논의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안 제19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정부로부터 제공 받은 피해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조치의 필요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통신판매중개자가 정부로부터 제공 받은 피해정보와 관련 조치의 필요성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성실하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피해정보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특정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할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제공한 피해정보 및 관련 조치의 필요성을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업체에 전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다음으로, 안 제1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중앙행정기관·소비자원이 요청한 판매 차단 등을 입점업체에 통보하고 관련 조치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 시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조사(안 제30조), 시정조치(안 제31조), 과징금(안 제32조)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소비자원의 판매 차단 등의 요청 근거 및 관련 조치의 범위, 제출기한, 제출 횟수 등을 명확히 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8) 국내대리인의 지정 의무(안 제20조)

□ 안 제20조는 일정 기준 이상의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는 ① 제정안 제19조의 안전관리 의무, ②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등²⁵⁾의 이행을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국내대리인의 법 위반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로 간주함.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122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⑨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목적·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 ① 국내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하며, ② 국내대리인은 통신판매중개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함.

제정안
제20조(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나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통신판매중개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중개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통신판매중개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중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중개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중개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지정 사항의 제출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 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플랫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 이행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제정안과 같이 통신판매중개자를 수범자로 규율 중인 「전자상거래법」²⁶⁾, 「개

26) 「전자상거래법」 [본조신설 2026. 1. 20.][시행일: 2027. 1. 21.]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나.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

2.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제1호나목의 사항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통신판매업자등은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인정보보호법」 27), 「정보통신망법」 28)등에서도 국내대리인 지정

1.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8)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41조제3항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안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례는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입법례>

구 분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국내대리인 지정대상	국내에 주소·영업 소가 없는 통신판 매업자 등 -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일정 기준 이상	국내에 주소·영업 소가 없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 등 - 이용자 수, 매출 액 등 일정 기준 이상	국내에 주소·영업 소가 없는 개인정 보처리자 - 매출액, 개인정 보 보유 규모 일정 기준 이상
국내대리인 업무	거래조건의 이행, 처분의 이행 등	관계 물품·서류 등 의 제출	- 개인정보 보호책 임자의 업무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개인정보보호위 원회가 요구하 는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미지정 시 제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9)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및 업무 관련 규정(안 제21조 ~ 제24조)

□ 「소비자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근거를 이관하고(안 제21조),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소비자안전 관련 조사·연구, 소비자안전 관련 교육·홍보, 위해재화 등에 대한 시정 건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등 기존 업무 범위 외에 사업자·등록소비자단체 등과의 소비자 안전 관련 협력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22조).

□ 또한, 소비자안전정보 및 소비자안전주의보의 주요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안 제23조),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규정을 이관하면서(안 제24조) 소비자안전센터가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이행 점검(제4항), 위해정보 분석을 위한 검사·평가(제9항)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위해정보 제출기관 대상으로 학교·유치원을 추가함(제7항).

제정안
제2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①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둔다. ② 소비자안전센터에 소장 1인을 두고,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4조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3.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위해 재화 등에 대한 시정 건의
5.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사업자 및 등록소비자단체 등과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7. 「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료 수거 및 결과 보고
8.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제23조(소비자안전경보등의 발령) ①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비자안전경보 또는 소비자안전주의보(이하 “소비자안전경보등”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안전경보등을 발령할 때 위해의 원인·결과, 위해 발생 이력, 위해 취약 집단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비자안전경보등의 발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해방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등의 발령

2. 재화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 위해 재화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권고의 수락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시정 권고에 따른 이행 내용과 실적
2.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재화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제출한 경우 소비자안전센터의 임직원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재화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13조에 따른 시정요청을 하여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재화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장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재화등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

신체·재산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병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해정보 제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위해정보 수집·제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⑧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소비자와 관계행정기관등에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소비자안전센터는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을 위해 해당 재화등에 대한 검사·평가를 할 수 있다.

⑩ 제1항·제2항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처리, 제8항에 따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9항에 따른 재화등에 대한 검사·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소비자안전 분야의 기본법인 제정안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안전센터의 역할을 구체화 또는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

-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소비자안전경보(주의보 포함)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발령 사유, 내용 및 절차를 상세히 정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시정권고 결과에 대한 이행 점검, 위해정보 수집 확대 등 안전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8항)으로써 소비자와 관계행정기관등에 위해 관련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다만, 안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제출한 경우 소비자안전센터의 임직원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 논의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조사대상과 관련하여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 제3항은 원장의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및 이행 결과 등의 제출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시정권고 이행 결과 등의 미제출자는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성실한 사업자에게만 행정적 부담을 지우고 불성실한 사업자는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제정안과 같이 시정권고 이행 결과 등의 제출 사업자에 대해 사업장을 출입·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주거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원칙²⁹⁾에서도 조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출입·점검 권한에 대한 증표 제시, 취득한 정보의 목적외 사용금지의무를 부과 및 위반시 처벌규정을 도입하여 동 권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소비자기본법」 제77조³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29)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0) **제77조(검사·서류수거와 자료제출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창고 등 저장소, 사무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은 물품등의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영업장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취득한 정보의 목적외 사용금지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처벌하고 있음.

- 둘째, 민간인 신분의 임직원이 사업장에 출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오·남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고려하여 안 제38조³¹⁾에서 제24조제1항·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소비자원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³²⁾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7조제5항(제8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31) 안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1항·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2)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뇌물죄 등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24조제3항의 사업장 출입·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 소비자원 임직원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0) 소비자단체소송(안 제25조 ~ 제28조)

□ 소비자단체소송은 제도가 도입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8건에 불과하고, 소비자안전 분야는 전무한 실정³³⁾으로, 소비자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안전 분야에 단체소송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제정안은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원의 소송 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제도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을 도입함.

- ‘현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청구 사유로 추가하여 예방적 금지 청구를 허용함.

- 제정안의 단체소송 규정이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규정을 준용하면서 소송허가신청 및 소송허가요건(제73조 및 제74조³⁴⁾)은 제외함으로써 법원의 소송 허가제를 폐지함.

33) 【참고자료】 소비자 단체소송 현황

34) 「소비자기본법」

제73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 소비자 안전 분야의 단체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신청으로 사업자 등에게 위해 및 그 발생 가능성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영업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를 함께 도입함.

제정안
제25조(소비자단체소송) ① 「소비자기본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현저한 위해가 예상되어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위해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소송의 제기는 소를 제기한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단체소송의 대상, 전속관할 등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³⁵⁾,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제3항³⁶⁾을 준용한다.

2. 피고

3.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동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26조(자료제출명령) ① 법원은 단체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위해 및 그 발생 가능성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위해 및 그 발생 가능성의 증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단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3.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 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 나.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 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2. 제1호 각 목의 자료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③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⑥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가 같은 항에 따라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같은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단서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

점까지를 말한다)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벌칙) ② 제27조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2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5)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71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7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6) **제75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소비자기본법」 제73조(소송허가신청) 및 제74조(소송 허가 요건 등)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소송 허가제도를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 생명·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안전 분야에서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생명·신체 등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분야에서 예방적 금지청구를 도입하려는 것임.

□ 또한, 제정안은 단체소송과 관련된 자료의 획득과 분석 등에서 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소비자가 위해 및 그 발생 가능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일정부분 해소하려는 것임.

□ 한편, 제정안은 소비자 단체소송 시 자료제출로 인한 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입법례³⁷⁾와 같이 법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2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

원의 비밀유지명령,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비밀유지명령 위반 시 처벌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
 있어 자료제출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3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1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4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같은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7조(벌칙)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 권익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임.

□ 다만, 제정안 논의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25조제1항 전단은 단체소송 요건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항 후단(서면 요청 의무)에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조문 내 일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제정안은 소송 제기 전 소를 제기한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피해발생이 임박한 경우 예방적 금지청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소송이 오랜 시간 진행되는 동안에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76조제2항³⁸⁾을 참조하여 소제기단체가 소송제기 단계에서 보전처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소송 허가제를 폐

38) 「소비자기본법」 제76조제2항은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 보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고, 별도 규정도 없음.

「소비자기본법」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②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지, 예방적 금지청구제도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³⁹⁾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11) 통신판매중개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제재(안 제30조 ~ 제32조)

□ 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안 제19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안 제20조)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근거 등을 마련함.

- 공정위는 직권 또는 신고로 안 제19조 및 제20조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위반행위에 대해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
- 위반사업자에 대해 행위 중지, 의무 이행,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위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안 제19조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에 대해 안 제5조제4항의 안전기준 위반 시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 및 사실 공표의 근거도 마련하

39) 의안번호 제2214328호, 제2214960호

고,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위반행위 관
 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제30조(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
 중개자가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
 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
 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
 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
 조치가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
 적인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9조 또
 는 제20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위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5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위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5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가해진 피

해의 정도

2.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통신판매중개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다만, 제정안 논의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31조제1항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안전관리의무(제19조) 또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제20조)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항 제5호에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과도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둘째, 과징금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안 제32조제1항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중개자는 직접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중개’를 한다는 점에서 이때 과

징금의 기준이 되는 매출이 ‘중개수수료’인지, 아니면 플랫폼에서 거래된 ‘총 거래액’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안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 사례(EU의 경우 연 매출의 최대 6% 등)⁴⁰⁾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거대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0)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은 2020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서비스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된 법안으로, 2022. 7. 25.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 11. 25. 유럽연합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발효 및 집행되었으며, 2023. 8. 25.부터 유럽연합 전역에서 시행됨.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DSA를 위반하거나 규제당국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으로부터 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매출의 6%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DSA 제26조, 제52조).(EU 디지털서비스법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2024. 1.)

【참고자료 1】 위해재화 안전기준 마련이 지연되는 주요 사례

사례 1. 핸드형 피부관리기(2025)

- 최근 핸드형 피부관리기 중에서 제품의 작동 방식에 따라 주파수가 과도하게 높아져 피부에 강한 자극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
 -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
- ※ 최근 의학적 효과를 표방하는 신기술 피부미용 제품 등이 다수 등장하여 미용기기(국표원)와 의료기기(식약처) 간 구분이 모호해지는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

사례 2. 먼지 제거 스프레이(2023)

- 환각 증상과 중독성 등을 유발하는 먼지 제거 스프레이를 생활용품점(다이소)에서 쉽게 구매하여 마약처럼 사용하는 실태가 발생
 - 국민신문고 신고에도 7개 기관 반려* ⇒ 소비자원이 업체 측에 요청하여 판매 차단 진행
- * 식약처, 국표원, 환경부, 진천군, 가스안전공사, 제품안전관리원, 의류시험연구원

사례 3. 화장솜(2023)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으로 557건의 위해 사례가 접수('21~'23년, 피부염, 안구손상 등)되어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 45개 제품 중 16개 제품에서 세균·진균 검출
 - 화장품 업체(화장솜 판매)를 관리하는 식약처에서 우선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아직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

사례 4. 속눈썹펌(2020)

- 속눈썹펌에서 특정한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성분(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물집, 화상 및 발진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
 - * 일부 헤어펌 제품(11%), 염모제(1%), 제모제(5%)
- 한국소비자원 건의 이후 식약처에서 안전기준 마련(2024)

사례 5. LED 마스크(2017)

- LED 마스크 사용과정에서 LED 등이 안구 망막 손상, 안구 결막염, 피부 손상(얼굴 따가움 및 통증) 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소비자정책위원회 권고(2019) ⇒ 국표원에서 안전기준 마련(2021)

【참고자료 2】 소비자 단체소송 현황

구분	소제기	원고	청구취지	소송 경과	최종 결과
1	하나로텔 레콤 건 (구 SKT)	2008. 7. · 소비자시민모임 등 3개 단체 · 한국 YMCA 전국연맹 (소송 불허가)	고객정보의 무단 제공행위 중지	· 1심: 약관 자진 시정→ 소 취하(2009.1)	소 취하 (사실상 승소)
2	티머니 건	2015. 12. · 한국소비자연맹	분실·도난된 티머니 카드의 신고 및 환불 거부 의 약관 중지	· 1심: 원고 패소(2017. 7.) · 2심: 원고 패소 · 대법원 상고 기각(2022. 6)	원고 패소
3	이통사 건 (SKT)	2015. 12. ·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 등의 중지	· 1심: 원고 패소(2017. 8.) · 2심: 원고 패소 · 대법원 파기환송(2023. 6) → 합의 소 취하	소 취하 (사실상 승소)
4	이통사 건 (KT)	2015. 12. · 한국소비자연맹	상동	· 1심: 원고 패소(2017. 8.) · 2심: 원고 패소 · 대법원 파기환송(2023. 6) → 합의 소 취하	소 취하 (사실상 승소)
5	이통사 건 (LG U+)	2015. 12. · 한국소비자연맹	상동	· 1심: 원고 패소(2017. 1 1.) · 2심: 원고 패소 후 항고 취하(2018. 3.)	패소 후 상고 포기
6	한국 전력 건	2016. 10. · 한국소비자연맹	기본공급약관에 따른 주택용 전력에 대한 누진 요금 부과행위의 중지 및 금지	· 1심: 원고 패소(2018. 10.) · 2심: 원고 패소(2019. 11.)	패소
7	호텔스닷컴 건	2017. 9. · 한국소비자연맹 등 5 개 소비자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 회·녹소연 전국협의회 (소송 불허가)	전자상거래법과 달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약관의 사용 중지	· 소 진행 도중 유사 사 안에 대한 사업자 승 소로 소 취하 결정	소 취하 (사실상 패소)
8	롯데 하이마트 건	2018. 12. · 한국소비자연맹	상품 확인을 위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에도 일률적으로 교환, 환불 등을 거부하는 약관 사용	· 1심: 약관 자진 시정→ 소 취하(2019. 1.)	소 취하 (사실상 승소)